

부속서 8-다
텔레비전 드라마, 다큐멘터리 및 방송용 애니메이션 공동제작

1. 양 당사국은 텔레비전 드라마, 다큐멘터리 및 방송용 애니메이션에 대한 양 당사국 간 공동제작을 장려한다. 양 당사국은 텔레비전 드라마, 다큐멘터리 및 방송용 애니메이션에 대한 공동제작이 각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수행됨을 확인한다.¹
2. 양 당사국은 텔레비전 드라마와 애니메이션에 대한 공동제작 협정을 검토하고, 양 당사국의 각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협상을 개시하는데 합의한다.

¹ 이 항의 목적상, 법과 규정은 다음을 말한다.

- 가. 중국의 경우, 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에 의하여 2004.9.21. 명령 제41호로 공포된 중-외 합작 텔레비전 드라마 제작 규정(애니메이션에도 적용), 그리고
- 나. 한국의 경우, 방송법(법률 제12743호, 2014.6.3.) 및 방송 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(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4-6호, 2014.6.5.)